

칸트의 실천적 자유의 연역에 관하여

허 정 훈*

1. 서 론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제3이율배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선험적 자유를 상정함으로써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로서의 실천적 자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칸트는 그의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의지를 도덕법칙 하의 의지로 즉 실천적 자유를 의지의 자율로 규정한다.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과 그것에 따라야 할 의무의 유일한 원리이다.... 법칙의 모든 실질에서의 독립성과 동시에 준칙이 일치해야 할 보편적인 법칙수립의 형식에 의한 의지의 규정에 도덕의 유일한 원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소극적 자유이며, 순수하고 실천적인 이성의 자기입법이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도덕법칙은 순수실천이성의 자율 즉 자유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자율 즉 자유가 모든 준칙의 형식적 제약이며, 이 제약 하에서만 모든 준칙은 최상의 실천법칙과 일치할 수 있다.”¹⁾

이 구절에 의하면 실천적 자유는 감성적 충동이라는 의지 외적 원인에서의 의지의 독립성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실천적 자유는 의지의 자율 즉 순수실천이성의 자기 입법이라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자유라 할 때 그것은 의지의 입법적인 성질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칸트는 왜 실천적 자유를 소극적인 의미의 실천적 자유로부터 구별하려 했을까? 바꿔 말해서 칸트는 실천적 자유를 자율적 자유로 규정하므로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1)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Felix Meiner, 1974, s.50 (이하 K.d.p.V.로 약칭)

써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그것은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 문제이다. 우리가 감성적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의지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도덕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 도덕법칙의 존재근거로서의 의지 자유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원론』은 그런 가능성을 부정한다. 칸트에 의하면 “정언명법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은 이 정언명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전제 즉 자유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한에서, 그리고 이 전제의 필연성을 통찰할 수 있는 한에서 대답될 수 있다...그러나 인간 이성에 의해서는 이 전제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는 통찰될 수 없다.”²⁾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지적 직관이 허용되어 있다면, 의지 자유는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예지적 직관이 없는 우리에게는 명백하지 않은 사실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순수이성이 어떻게 실천적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의지 자유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며, 이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면 이성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독단에 빠진다. 이 때문에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에서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시도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을 전제로서 인정할 뿐이다.

“자유는 한갓된 이념일 뿐이며, 그것의 객관적 실재성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어떤 가능한 경험에 의해서도 증시될 수 없다. 어떤 유비에 의해서도 자유의 실제 사례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이념은 결코 이해될 수 없고 통찰될 수도 없다. 자유는 의지 즉 단순한 욕구능력과는 구별되는 능력(자신을 예지자로서, 따라서 자연적 본능에서 독립해서 이성의 법칙에 따라 행위하도록 규정하는 능력)을 의식한다고 믿는 존재자에 있어서 이성의 필연적인 전제로서 타당할 뿐이다.”³⁾

그러나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천이성은 사변이성과 아무런 협의없이 인과성의 범주의 초감성적

2)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uhrkamp, 1956), Bd. VII., s.98-9. (이하 Grundlegung)

3) Grundlegung, s.96.

대상 즉 자유에다 실재성을 부여하며, 단지 생각될 수만 있었던 것을 사실에 의해 확증한다.”⁴⁾

어떻게 이와 같은 입장의 전환이 가능한가?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 부정된 자유의 실재성이 어떻게 『실천이성비판』에 와서는 긍정되는 것일까? 어떤 가능한 경험적 실제 사례에 의해서도 증시될 수 없는 실천적 자유가 어떻게 실재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본고는 칸트가 실천적 자유를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부터 구별하고 자율적 자유로 규정함으로써 자유의 실재성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점과 나아가 그러한 실천적 자유의 연역이 성공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칸트의 그러한 작업이 성공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의 칸트의 입장과 『실천이성비판』에서의 입장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순수이성의 사실과 실천적 자유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 실천적 자유는 증명할 수 없다고 보던 입장에서 『실천이성비판』에 와서는 왜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을 문제삼고 있으며 나아가 증명될 수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가? 이것은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주된 목적을 “도덕의 최상 원리에 대한 탐구와 확립”⁵⁾에 두고 있다고 볼 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의 최상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런 원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자유와 행위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없이 “자율의 원리가 도덕의 유일한 원리라는 것을 도덕성의 개념들에 대한 분석만으로”⁶⁾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도덕의 일반적 개념 즉 의무 개념에서 출발하여 유일한 도덕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근거로서의 자율에로 진행되는 분석적 과정은 전적으로 법칙 개념 그 자체에 대한 형식적 분석의 절차이다. 칸트는 이런 분석 절차를 통해 정언명법이 아닌 실천 규칙들은 결코 도덕법칙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도덕법칙은 자율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4) K.d.p.V., s.6.

5) Grundlegung, s.16.

6) Grundlegung, s.75.

것을 보여준다. 바꿔 말해서 그는 이런 분석에 의해 자유가 도덕의 유일한 최상 원리라는 것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덕의 최상 원리의 정립은 현실에서 그런 도덕법칙에만 의거하는 행위의 실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의 여부에 대한 문제에는 아무런 단서도 마련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의 칸트의 관심은 “의무라는 순수한 근원으로부터 일어난 행위가 여지껏 없었다해도,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그런 행위가 사실 생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이 그 자체로 모든 현상에서 독립해서 생겨야 할 것을 명령한다는 것”⁷⁾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도덕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찾는 문제와 그런 도덕적 개념이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행위의 문제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의 칸트의 관심을 이와 같이 한정한다고 해도, 자유의 증명불가능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칸트의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의 준칙이 다만 도덕적 근거와 의무의 표상에만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확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⁸⁾

“자율의 원리는 ‘선택의 준칙이 동일한 의욕 속에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포함되는 것 이외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규칙이 하나의 명법이라는 것, 즉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자신의 제약으로서 규칙에 필연적으로 속박된다는 것은 명법 속에 나타나는 개념들에 대한 단순한 분석에 의해서는 증명되지 않는다.”⁹⁾

자유는 이념은 그 밑에서만 도덕법칙 즉 정언명법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전제이므로, 자유의 객관적 실재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도덕법칙의 객관적 실재성에 대한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¹⁰⁾ 다시 말해서 이념을 직접적

7) Grundlegung, s.35.

8) Grundlegung, s.34.

9) Grundlegung, s.74-5.

10) “무제약적으로 실천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애초에 어디서 출발하는가, 즉 그것이 자유에서인가 아니면 실천법칙에서 인가...그런데 무제약적으로 실천적인 것의 인식이 자유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최초의 개념은 소극적이어서 우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지적 직관능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도덕법칙의 연역을 통해서 그것의 가능성의 유일한 전제로서 자유에 대한 연역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가 행위에 의해 생기는 결과나 달성되는 목적에 있지 않고 행위를 규정하는 의지의 준칙에 있다고 보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험적인 행위가 도덕적 의무로부터 수행된 것인지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행위는 가시적이지만 그 내적 원리는 비가시적이므로, 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이 의무를 가장하고 있는 자기애의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선의지에 의해 행위하는 것과 행위를 통해 선의지를 증명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며, 전자는 이성의 원인성을 토대로 행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해도 후자는 다른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는 정언명법의 객관적 실재성 즉 도덕법칙의 선험적 연역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가능한 유일한 것은 도덕법칙의 형식적 분석을 통해 자유가 도덕법칙의 전제라는 것을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도덕법칙의 선험적 연역이 불가능했던 「도덕형이상학 원론」에서는 당연히 실천적 자유의 증명 또한 불가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문제로 삼을 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무에서 행위하는 인간의 순수한 도덕적 관심 즉 행위의 어떤 결과나 의도가 아니라 행위 자체와 그것의 이성적 원리에 대한 관심 또한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의지 자유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이 도덕법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어떻게 그리고 왜 법칙으로서의 준칙이 지닌 보편성 따라서 도덕성이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¹¹⁾ 따라서 「도덕형이상학 원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어떤 답변도 제시할 수 없었다. 이성적 행위자로서 내가 자유의 전제위에서 행위해야만 하며, 자유의 전제로부터 자율의

리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현상들의 법칙을 즉 자유와는 반대된 기계적 자연을 인식하게 하므로 경험으로부터 자유를 추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순수한 오성의 의식(의식일반)이 순수한 이론적 원칙들에서 발생하듯이 순수 의지의 개념은 순수 실천법칙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것이 두 개념에 대한 올바른 순서이다.” K.d.p.V., s.34-5.

11) Grundlegung, s.97-8.

원리가 따라 나오는 것이 당연다하해도, 나는 이성적 존재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 이 원리에 종속시키고 있는가? 나는 왜 내 행위를 동시에 보편법칙으로서 의욕될 수 있는 준칙을 지닌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또한 왜 쾌락의 요구에 비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행위에 최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정감적인 관심은 정언명법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런 관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감적 관심 대신 의무에의 관심 즉 도덕적 관심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존경심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도덕적 관심 자체는 도덕법칙이 구속력을 지닌다는 가정에서 귀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그런 도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법칙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덕법칙이 우리의 의지로부터 비롯되어 우리에게 타당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 와서는 순수 도덕성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는 추상적인 일반적 공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용을 통해서, 마치 왼손과 오른 손의 구별처럼 오래 전부터 상식화되어 버린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도덕의 “원리는 그것의 탐구도 그것의 발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이성 중에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본성과 결합해 있는 것”¹²⁾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도덕의 원리가 인간 본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칸트의 말은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의식과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의 불가분성에 대한 주장이다.

칸트의 인식론에 의하면, 현상의 배후에 현상 아닌 그 무엇, 즉 현상으로만 이루어진 주관의 배후에 그 근저로서 놓여있는 자아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아에 대한 의식 즉 자기의식은 자기 존재의 의식이라기 보다는 자기 활동 또는 자발성의 의식이다. 그런 자발성의 능력은 오성과 이성인 데, 특히 이성능은 수용성의 능력으로서의 감성이나 개념의 능력으로서의 오성과는 달리 이념의 능력으로서 무제약자이로 지향하는 능력이다. 그런 무제약자는 대상으로서의 감각가능한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자유의 원인성일 뿐만 아니라,

12) Kdp.V., s.122.

그것에 필연적으로 관련된 행위의 무제약적 규정으로서의 도덕법칙이다. 칸트에 있어서 자기의식은 감각직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식에 드러나는 이성의 순수한 자발적 활동으로서의 종합의 활동이므로, 그것은 그런 활동에서 드러나는 원리에 대한 이성적 이해이며, 실천이성의 경우 그런 원리는 욕구의 다양을 통일하는 의지의 원리로서의 준칙 또는 법칙이다.¹³⁾

이러한 이성의 자발적 활동으로서의 자기의식을 토대로 할 때, 우리가 의지의 준칙들을 생각하자마자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도덕법칙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칸트는 우리 행위의 모든 경험적 제약들을 제거할 때, 도덕법칙은 순수이성의 유일한 사실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순수 직관이든 경험적 직관이든 그 어떤 직관에도 의존하지 않고서 선천적인 종합명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따라서 순수이성의 유일한 사실은 경험적 사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어도 그것에 일치한 행위를 통해 경험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순수 이성의 필연적 사실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이론적 실재성의 사실이 아니라 실천적 실재성의 사실이어야 한다. 바꿔 말해서 그것은 나무나 탁자, 무게, 원자, 운동과 같은 것들에 대한 사실은 아니지만, 인격, 의지, 동기, 관심과 선택 그리고 행위 및 목적과 수단에 대한 사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이성의 사실이야말로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형이상학 원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와 행위의 준칙 또는 도덕법칙을 외적으로 직접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덕법칙이 이성의 사실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실천이성비판』의 관점에서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라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이성의 명령을 의식하고 그 수행을 의무 즉 도덕법칙에 의한 필연적 강제로서 의식하는 행위 주체의 의식에서는 그 행위와 그것을 명령하는 도덕법칙과의 직접적인 내적 결합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은 그 자신 지금 의무에 의거한 당위를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하자면 행위 수행에 있어서 자기의 의지가 도덕법칙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오류를 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성과 자기애의 경계는 명백하고 확실하며,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어떤 것이 도덕이며 어떤 것이 자기애의 영역에 속하는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

13)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New York: Harper & Row, 1967), p.220.

일 도덕법칙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이러한 당위 의식과 자신의 행위 본성에 대한 의식은 생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이성의 사실은 우리의 당위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 필연적으로 확실하고 그 어떤 연역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칸트는 의심할 수 없는 순수이성의 사실을 토대로 도덕법칙의 실재성을 확립한다. 즉 도덕법칙은 경험 속에서 그 어떤 실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순수 이성의 사실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물론 도덕법칙의 실재성을 확립하는 이런 방식은 이론 이성의 선험적 연역에 비해 연역이라고 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순수 이성의 사실에 의해서 도덕법칙의 객관적 실재성은 그 자체로 확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유의 연역이 가능하게 되는 소득이 생긴 것이다.

“헛되이 구해진 도덕 원리의 연역 대신에 아주 다른 것이 나타났다. 즉 도덕 원리 자체는 거꾸로 어떤 경험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변이성이(우주론적 이념에서 원인성의 무제약자를 추구함에 있어서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적어도 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던 다 캐낼 수 없는 능력을 연역하는 원리로서 사용된다. 그것이 자유의 능력이다. 자신을 정당화할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도덕법칙이 그것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실성을 그 법칙을 자신에 대해 구속적인 것으로 의식하는 존재자에게서 증명한다.”¹⁴⁾

본래 자유는 이론이성에서는 단지 개연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었던 이념이었다. 그런데 이제 순수이성의 사실에 의해 이 개연적인 개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상을 가지는 개념으로 탈바꿈한다. 왜냐하면 “도덕법칙 자체가 순수이성의 원인성으로서의 자유를 연역하는 원리”¹⁵⁾가 되기 때문이다. 즉 순수이성의 사실에 의해 확립된 도덕법칙이 사변이성에 의해서는 그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소극적인 것으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유의 원인성에 적극적인 의미 즉 준칙의 보편적 입법 형식이라는 제약을 통해 의지를 직접 규정하는 이성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순수이성의 사실을 부정한다면, 도덕법칙의 존재근거인 자유에 어떤 적극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되

14) K.d.p.V., s.56.

15) K.d.p.V., s.57.

고, 결과적으로 도덕법칙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순수이성의 사실로부터 확립된 도덕법칙이 사변적 입장에서는 항상 초월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성의 개념들에 비로소 실천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실재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도덕법칙에 의해 이성의 초월적 사용이 경험의 분야에서 이념 자체를 통해 작용하는 원인일 수 있도록 하는 이성의 내재적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칸트는 자유는 도덕법칙에 의해 “사변이성의 모든 이념 중에서도 그것의 가능성을 우리가 통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아는 단 하나의 이념”¹⁶⁾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는 이념이 바로 자유라는 칸트의 주장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증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하고 있다는 순수이성의 사실이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칸트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감성적 직관을 바탕으로 두고서 성립하는 선천적인 인식만이 확실한 인식이다. 만일 우리의 인식이 경험에서 도달될 수 없는 대상을 향한다면, 그 인식은 오직 가상만을 산출하는 사변적 독단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사변이성의 이념들은 초월적이며 따라서 경험의 대상에 대한 사용으로서의 내재적 사용이 있을 수 없고 구성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자유의 실재성에 대한 인식을 인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순수이성비판』에서 한계를 부여했던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이성의 실천적 능력에 있어서는 “이념들은 내재적이 되고 구성적이 된다”¹⁷⁾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론이성에 대해서는 초월적이었던 것이 실천이성에 있어서는 내재적이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인식의 확장이 가능한가?

물론 칸트는 인식의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16) K.d.p.V., s.4.

17) K.d.p.V., s.155.

는 인식의 확장에 실천적인 관점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런 조건은 인식의 확장이 결코 이론적 인식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도덕법칙이 자유 이념의 객관적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그것은 그 객관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개연적인 사고 내용이었던 자유가 순수 이성의 사실에 의해 비로소 객관적 실재성을 갖는다는 것은 초감성적 대상들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확장한 결과가 아니다. 그런 인식의 확장은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념을 구성적으로 사용하려는 확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실천이성이 이념에 객관을 주는 한에서 우리의 인식은 확장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의 인식의 확장은 “이론이성이 초감성적인 것 일반에 대해 그런 대상들이 존재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한에서 이론이성과 그 인식의 확장이다.”¹⁸⁾ 그렇지만 분명 그런 “이론이성의 확장은 어떤 사변의 확장도 아니다.”¹⁹⁾ 따라서 실천적 관점에서의 인식의 확장은 사변의 확장이 아닌 인식의 확장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의미의 인식의 확장 즉 실천적 관점에서의 이성 사용의 확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이성의 우위와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이성의 관심에 대한 관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 의미에서 우위라는 말은 “어떤 것들에게도 종속될 수 없는 것에 다른 것들이 종속될 때, 그것의 관심의 우월”²⁰⁾을 의미한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 심성의 모든 능력에는 원리로서의 관심이 주어져 있으며, 그 중 이성 능력은 모든 관심을 규정하고 또한 이성 자신의 관심도 스스로 규정하는 능력이다. 이성의 사변적 사용의 관심은 대상을 인식하여 실천적인 최고 원리에 도달하는 것이며, 실천적 사용의 관심은 최후의 목적에 관해서 의지를 규정하는 원리에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 즉 이성사용 일반이 가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그 원리들이나 주장들이 서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론이성의 원리들 사이에서나 실천이성의 원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원리들 사이에서도 요구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그것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사변적으로 사용되든, 실천적 관심에 따라 실천적으로 사용되든, 하나의 동일한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칸트는 이론이성이나 실

18) Kdp.V., s.155

19) Kdp.V., s.154.

20) Kdp.V., s.138.

천이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성으로서 이성의 관심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이성이 이성 자신과 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확장하는 것”²¹⁾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런 이성의 확장은 실천이성의 우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우위 또는 하위라는 관계가 없다면, 순수 이론이성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 좁게 만들어 버리며, 순수 실천이성은 모든 것으로 확장해 버리기 때문에, 이성은 그 자체 하나의 이성이 되지 못하고 부조화 또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론이성의 측면에서 보면, 초월적인 실천이성의 명제들을 자신의 개념들과 결합시켜 볼 것인가 아니면 공허한 궤변으로 거부해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에 봉착한다. 바꿔 말해서 어떤 이성의 관심이 우월한 관심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칸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수 사변이성과 순수 실천이성이 하나의 이성으로 결합할 때, 이성의 “모든 관심은 궁극적으로 실천적이 되며, 사변이성의 관심마저도 제약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만 완전한 것”²²⁾이 되기 때문에 순수 실천이성이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칸트는 이성의 실천적 관심에서 발생한 명제들이 이론적 관심에 모순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명제들이 순수이성의 실천적 관심에 불가분적인 한에서, 비록 이론적 관점에서 그 명제들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해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순수 이성비판』에서도 “이성이 한갓 사변의 분야에서는 충분한 논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전제할 수 없는 것을 실천적 사용에서는 가정할 권리를 갖는다”²³⁾고 말하고 있다. 이런 권리에 의하여 우리는 인식을 확장시키며 동시에 그 확장된 인식에 따라 인간이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예지적 존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권리와 그것에 의한 어떤 것의 승인은 이론이성의 지식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순한 가설이나 가정도 아니다. 그것은 실천적 관점에서의 요구이며, 임의적 의도에서 하는 가설적 요구가 아니라 법칙적인 요구이다. 그런 요구는 그럴듯한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요구이다.

21) K.d.p.V., s.138.

22) K.d.p.V., s.140.

23)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1966, B804 (이하 K.d.r.V.)

그런 요구로부터 이성에 의해 승인된 확장된 인식은 초감성적인 것을 규정하는 사고로서의 인식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 아니라, 존재해야 할 것에 대한 실천적 인식²⁴⁾이다. 물론 그것은 초감성적인 것을 어떤 술어로 규정하지만, 그것은 오직 실천적 목적과 그 조건을 위해서일 뿐이다. 즉 우리는 이념을 엄밀한 의미에서 감성을 규정하는 인식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오직 실천적인 목적과 조건에 관련해서만 초감성적인 것을 규정하는 원리로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선천적이고 종합적인 실천원리들에 의해 그것들이 서술하는 하나의 세계 즉 도덕적 세계를 구성해내며, 이에 따라 이념들은 내재적이고 구성적이 된다. 우리는 도덕법칙에 의해 자유가 우리 자신의 술어임을 실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도덕법칙에 의해 명령되는 행위를 위해 존재해야 할 것으로 전제되는 것으로서의 자유에 대해 우리는 실천적으로 인식한다.

요컨대 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 즉 의지가 도덕법칙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의식으로부터 드러나는 자유를 우리는 실천이성의 우위에 의거해서 인식한다. 오직 보편법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무제약적인 실천원리는 제한적인 이성적 행위자에게는 정언명령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당위이며, 그것에 따라 행위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 것이다. 행위가 도덕법칙에 일치한다는 사실은 감성계에서는 마땅히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하며, 마땅히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즉 행위가 자유의 산물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칸트는 반복적으로 의무와 법률에 대한 상상적 관념에서 이런 사실의 승인을 찾아낸다. 모든 사람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한 상상적 구별의 직관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오성의 범주들을 논리적 판단의 기능에 근거한 가능적 경험의 원리로서 필연적으로 전제해야 하며, 그래서 그것들을 선천적인 사고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의 법칙은 이성적 행위와 도덕적 경험의 통일을 위해 전제해야 하는 선천적인 행위 법칙이다. 범주들은 사고를 지식으로

24) 『판단력비판』에서 칸트는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3종류, 즉 경험적 직관에 일치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이론적 가능성을 지니지만 기술적으로 검증불가능한 개념들의 객관들, 그리고 개념의 실재성이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객관적 사실들, 마지막으로 이론적 사용을 초월하지만 의무에 일치해서 순수 실천이성의 사용에 준거하고 귀결로서는 근거로서는 선천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객관들로 분류하고 있다. Kritik der Urteilskraft (Felix Meiner, 1974), s.341-4.

만들며, 지각을 경험으로 만든다. 도덕법칙은 행위를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의무와 도덕의식이 실천적인 것으로서의 이성 자신에 대한 개념에 필연성을 주며,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내적 본성이나 그 가능성을 사변적으로 인식하자 못하면서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술어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안다. 자유는 실제로 도덕법을 의무로서 의식하는 자에게 속한다. 즉 이성의 이념으로 향하는 순수 활동으로서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의식으로 해서 인간은 이성의 법칙 밑에 있을 수 있는 가상적 성격을 지닌 가상체 즉 예지적 존재이다. 물론 인간은 현상계의 한 존재로서 인과적 자연필연성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의 이성 능력으로 인해 자신을 예지계에 속하며 따라서 자유의 이념 하에서 행위하고 정언명령에 종속되는 예지자로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과 경향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모든 욕망과 경향성을 무시하므로써만 가능하고 심지어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의 원인성은 예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특히 예지계의 원리에 따른 행위의 법칙 중에 있기 때문이다.

3. 실천적 자유와 절대적 자발성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순수이성의 사실은 「도덕형이상학원론」과 「실천 이성비판」을 구분하고, 후자에서 자유를 증명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즉 칸트는 이성의 사실에 의해 당위를 의식하는 행위 주체의 실천적 측면에서 도덕법칙의 존재를 확립하고 그 도덕법칙으로부터 자유를 증명하고 있다.

“순수의지 즉 순수 실천이성의 객관적 실재성은 도덕법칙에서 선천적으로 사실로서 주어져 있다. 사실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의지 규정---비록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더라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지의 개념 중에 원인성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순수의지의 개념 중에는 자유의 원인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자연법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의 실재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경험적 직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원인성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객관적 실재성은 선천적인 순수 실천법칙에서---비록 이성의 이론적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적 사

용을 위해서지만---정당화된다.”²⁵⁾

그러면 이와 같이 아무런 경험적 직관에도 의존함이 없이 그 실재성이 순수 이성의 사실인 도덕법칙에 의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으면서 순수이지 또는 순수 실천이성의 능력 속에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앞서 고찰한 것처럼, 순수 이성의 사실에 의해 주어진 의무와 도덕의식을 통해 실천이성은 독자적으로 즉 이론이성과의 아무런 협의없이 이론이성이 단지 상정가능성만을 확보했던 자유의 원인성이라는 초감성적 대상에다 실재성을 부여했다. 그런데 칸트는 『순수 이성비판』의 제3이율배반을 다루면서 원인성의 개념을 사용할 때 사변이성이 불가피하게 빠지는 이율배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절대적 자발성이라는 의미의 「선험적 자유만이 선천적으로 실천적」²⁶⁾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선험적 자유는 감성계를 규정하는 모든 원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그렇다면 순수이성의 사실에 의해 그 실재성이 입증된 실천적 자유가 선험적 자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과는 달리 우리 행위가 자연적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 철학 전체에서 볼 때 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면 순수이성의 사실에 의해 실재성을 갖게되는 자유는 어떤 의미의 자유인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칸트의 주장이 이런 문제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오직 보편적인 입법의 형식 이외에 어떤 다른 규정근거도 의지에 대해 법칙으로 사용될 수 없다면, 그런 의지는 현상들에 관한 자연법칙 즉 인과적 법칙에서 전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이 독립성이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즉 선험적 의미에서 자유이다. 그러므로 준칙의 입법적인 형식만을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가 곧 자유의지이다.”²⁷⁾ 이 귀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율적 자유로서의 실천적 자유와 선험적 자유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준칙의 입법적인 형식만을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의 자유는 바로 자율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구절은 자율적 자유로서의 실천적 자유와 선험적 자유의 관계는 전자가 필연적으로 후자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실천적 자유는 선험적 자유의 의미를 가지므로써 선천

25) K.d.p.V., s.65.

26) K.d.p.V., s.112.

27) K.d.p.V., s.33.

적인 실천적 자유 즉 적극적인 자율적 자유일 수 있다. 즉 선험적 자유만이 선험적으로 실천적 자유라는 칸트의 주장은 바로 선험적 자유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실천적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는 「순수실천이성의 분석론」에서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순수실천이성의 연역에 대하여」라는 절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론은 순수이성이 실천적이라는 것, 즉 그 자체로 모든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의지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순수이성이 실제로 실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의해 증명했다. 이 사실은 이성이 의지를 행위로 규정하는 도덕의 원리에서는 자율이다. 동시에 그것은 이 사실이 의지 자유의 의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것, 아니 그런 의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⁸⁾ 이 구절은 “자유 의 개념은 불가분적으로 자율의 개념과 결합해 있으며, 자율의 개념은 도덕의 보편적 원리와 결합해 있다”²⁹⁾는 말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순수이성의 사실은 도덕의 원리로서의 자율의 원리이고, 그런 자율의 원리는 바로 자유의 의식과 결합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떤 행위를 수행하도록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된 의지는 당위의 의식을 매개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의식한다. 이 의식되는 자유는 법칙의 표상 즉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으로서의 의지가 의식하는 자발성이므로, 그것은 실천이성의 입법에 있어서의 절대적 자발성이다. 그러므로 의지에 의해 의식되는 자유는 실천이성의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선험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도덕법칙에 의해 규정된 의지는 행위를 수행할 때 결과적인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실천이성의 절대적 자발성 곧 선험적 자유를 의식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자유의 원인성 즉 선험적 자유를 매개로 이성과 행위와의 인과적 결합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여기서의 선험적 자유의 의미는 제3이율배반에서의 행위를 개시하는 이성의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자유의 원인성과 같은 의미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자연적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여기서 실천이성이 의지규정을 통해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서 의식되고 따라서 그것에 선험적 자유가 귀속될 수 있다해도 이성

28) K.d.p.V., s.50.

29) Grundlegung, s.89.

과 행위와의 인과적 관계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성의 사실로 주어지는 도덕 법칙에서 실천이성은 입법능력 또는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일 뿐이지, 직접적으로 현상적 결과로서의 행위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순수의지 특히 선의지를 규정하는 능력이다. 『도덕형이상학원론』에 의하면 “실천능력으로서 즉 의지에 영향을 주는 능력으로서 이성(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타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 이성의 참된 사명”³⁰⁾이다. 따라서 실천이성에 의해 개시되는 결과는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현상적 행위에 앞서 의지에 주어지는 이성의 명령과 그것이 수행될 수 있다는 의식인 것이다. 현상적 “행위는 그것을 규정하는 과거의 모든 것과 더불어 이성적 존재자 자신이 만들어 낸 성격의 유일한 현상에 속하는 것”³¹⁾이다. 즉 행위는 성격으로부터 자연적 인과율에 의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이성은 현상적 행위를 직접 규정하는 원인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이 되는 성격 즉 의지의 성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규정하는 원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실천이성은 어떤 경험적 동인없이 의지를 오직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의지 규정능력으로서의 순수 이성에는 절대적 자발성이 귀속될 수 있다. 즉 의지가 당위 의식을 매개로 이성의 절대적 자발적인 원인성을 의식한다는 것은 순수이성이 도덕법칙에 따르는 의지를 스스로의 절대적 자발적인 원인성의 결과로 생기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가 당위의 의식을 매개로 이성의 절대적 자발적인 원인성을 의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즉 선천적인 실천적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의식된 이성(이성)에 선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위의 도덕적 명령은 행복의 지령이나 훈계와는 달리 행위 주체의 물리적 능력과 같은 모든 자연적 제약으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도덕적 가능성만에 의거해서, 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순수의지에는 자연적 필연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절대적인 자발적 원인성으로서의 선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선험적 자유만이 선천적으로 실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순수이성의 사실에 의해 실재성을

30) Grundlegung, s.21.

31) K.d.p.V., s.114.

갖게되는 자유가 실천적 자유에 있어서의 선험적 자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선험적 자유는 어디까지나 실천적 자유에서의 선험적 자유에 불과하다. 즉 여기서의 선험적 자유는 도덕법칙을 의식하는 행위 주체에 의해서 의식되는 한에서의 선험적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덕법칙에 의한 이성의 단적인 의지규정의 절대적 자발성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현상적 행위를 그 결과로 삼는 원인성 즉 행위 산출의 측면에서의 원인성으로 본다면, 여기서의 선험적 자유는 의지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런 행위 산출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행위 산출 능력으로서의 절대적인 자발적 원인성이 아니라, 단지 의지 규정 능력으로서의 그런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순수이성이 의지를 규정하기 위해 자신만으로 충분하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제약된 이성으로서만 의지의 규정 근거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어떻게 순수이성이 직접적으로 대상의 현실성에 관한 이성적 존재자의 원인성으로서의 의지의 규정근거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칸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런 칸트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의지가 당위 의식을 매개로 어떤 행위에 관한 이성의 절대적인 자발성을 의식하는 것과 의지가 도덕법칙 즉 순수이성만에 의해서 어떤 행위의 수행으로 규정되는 것은 동일한 사태에 대한 두가지 다른 표현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증은 행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실천적 자유를 행위산출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제3이율배반을 물자체와 현상의 구별 그리고 가상적 성격과 경험적 성격의 구별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데, 그 두 성격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천적 자유는 의지규정의 자유라기 보다는 행위의 자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는 경험적 성격을 가지며, 이 경험적 성격이 그의 전 행위의 원인이다.”³²⁾ “경험적 원인성 자체가...비경험적인 가상적 원인성의 결과”³³⁾이며, 감성계의 “주관은 가상적 성격을 통해서 현상으로서의 자기 행위의 원인이지만, 가상적 성격 자체는 감성의 어떤 제약에

32) K.d.r.V., B580

33) K.d.r.V., B572

도 종속하지 않으며 현상이 아니다.”³⁴⁾ “모든 행위는 그것이 다른 현상들과 같이 있는 시간관계를 무시하면 가상적 성격의 직접적인 결과이다.”³⁵⁾ 이와 같은 칸트의 언급들을 고려하면, 가상적 성격과 경험적 성격은 각각 결과로서의 현상적 행위의 가상적 원인과 경험적 원인이 되며, 다시 경험적 성격은 가상적 성격에 의해 규정된 결과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상적 성격과 경험적 성격은 동일한 의지에 대한 두가지 관점이다. 즉 동일한 의지가 물자체에 속하고 따라서 자연법칙에 구속받지 않는 순수의지로 그리고 동시에 현상계에 속하고 따라서 자연법칙에 구속받는 경험적 의지로 보여진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오직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동인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이고, 이성은 결과들의 경험적 계열의 감성적 제약을 비로소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성은 현상적 행위의 경험적 원인인 경험적 의지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성이 행위 산출의 절대적인 자발적 원인성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행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성은 행위의 경험적 원인성으로서의 경험적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행위를 산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성이 행위의 원인 즉 감성적 제약으로서의 경험적 의지를 산출하는 측면에서 실천적 자유를 고려할 때, 그것은 「실천이성비판」에서 논의되는 실천적 자유와는 분명 다르다. 왜냐하면 「순수이성비판」과는 달리 「실천이성비판」에서는 경험적 의지가 아니라 순수의지가 순수이성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선천적인 실천명제로서의 순수 실천이성의 규칙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칸트는 그런 “의지는 경험적인 제약에서 독립한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순수의지로 생각된다”³⁶⁾고 말하며, 그런 순수의지는 일체의 경험적 동인이 없이 선천적 원리로부터 규정되는 의지라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상으로서의 행위는 이론이성에 의해서 인식되는 데 순수의지는 이론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순수의지를 행위의 경험적 원인으로서의 현상적 의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의지와 현상으로서의 행위에는 어떤 인과적 관계도, 자연적 인과성으로서든 자유의 인과성으로서든, 가정될 수 없다. 즉 의지를 규정하는 순수이성과

34) K.d.r.V., B567

35) K.d.r.V., B581

36) K.d.p.V., s.36

현상으로서의 해위에는 아무런 인과적 관계도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실천이성비판」에서 증명된 것은 실천이성 또는 순수의지와 경험적 의지와의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가 실천적 자유를 선천적인 실천적 자유 즉 자율적 자유로 보는 한, 의지 규정에서 이성의 절대적 자발성과 그에 따른 자유의 원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과 행위를 산출하는 것과의 관계에 선험적 자유를 원인으로 하는 인과적 관계 즉 자유의 원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이성과 순수의지와와의 관계에만 인정한다면, 그 원인의 결과가 현상이 아닌 점에서 절대적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칸트는 현상계의 필연적인 인과적 체계와 행위에서의 선험적 자유의 원인성과의 딜렘마³⁷⁾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신 행위를 산출하는 절대적 자발성은 확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무엇을 근거로 선험적 자유가 행위 산출로서의 실천적 자유의 기초라고 주장하고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점은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행위의 직접적 원인일 수 없는 순수의지와 행위의 경험적 원인으로서의 경험적 의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런 불명확성은 실천적 자유에 대한 선험적 자유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분석이 「순수이성비판」의 주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칸트는 두 자유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 대신 선험적 자유가 상정될 수 있다면 실천적 자유는 충분히 성립하는 것처럼 보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실천적 자유를 어떻게 선험적 자유와 관련된 선천적인 실천적 자유로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고찰해온 바에 의하면, 칸트는 실천적 자유에 의거해서 선험적 자유를 상정하고 그 실재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선천적인 실천적 자유를 오

37)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 p.192

직 실천적 관점 즉 순수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법칙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었다. 즉 선험적 자유의 실재성을 실천적 관점에서 선천적인 실천적 자유로서 증명하였지만, 행위의 자유로서 증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이성의 사실로부터 그것의 법칙이 자율로서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인식한다고 해도, 현상적 행위에서 우리가 실제로 자유인지 즉 자연적 필연성에 지배되는 현상계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그런 자연적 필연성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개시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바꿔 말해서 『순수이성비판』에 함축된 행위 자유로서의 실천적 자유의 실재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칸트의 요청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칸트는 우리가 만일 지성적 직관을 가질 수 있다면, 현상의 전 연쇄가 물자체에 속한 주체의 자발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직관이 없으므로 현상계에서 우리 행위의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선험적 자유와 그것의 실재성은 이론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칸트는 자유를 실천적인 고려에서 전제되는 요청이라고 주장한다.

요청은 그 자체 논증할 수 없는 그렇지만 무제약적으로 타당한 선천적인 실천법칙에 불가분적인 이론적 명제를 말한다. 그것은 이론적인 명제이므로 이론이성의 인식 대상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논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그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증명될 수 없는 개연적인 개념이며, 단지 이론이성의 인식을 체계화하는 데 요구되는 개념일 뿐이다.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객관의 실재성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특히 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과 인식의 필요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개연적인 개념은 그것의 객관을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는 그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필연적인 가설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이성의 필연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사변적 사용에 있어서의 순수이성의 요구는 가설에 도달할 뿐이지만, 실천이성의 요구는 요청에 도달하며, 그런 요청은 가설로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실천적 관점에서의 요구로서 정당화되는 것이다. 실천적 관점에서의 요구는 도덕법칙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명령되는 행위의 수행을 위한 이론적 전제이다. 요컨대 요청은 도덕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이론적이며 필연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칸트는, 앞서 본 것처럼, 자유가 감성계에 속하는 존재자의 선행적 술어이지만, 우리 자신의 술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인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순수이성의 사실을 통해 의지 규정에서의 이성의 절대적 자발성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순수이성과 현상적 행위 산출 사이의 인과적 관계를 확립할 수 없었던 칸트로서는 자유에 대해 요청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순수이성의 사실에 의해 증명되는 실천적 자유에 의거해서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선행적 자유를 의지 규정의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해도, 행위 산출 또는 그 원인으로서의 경험적 의지의 규정을 통한 행위 산출의 절대적 자발성으로서의 선행적 자유는 요청되는 필연적 가설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Hrsg. von Wilhelm Weischedel (Suhrkamp, 1956), Bd. VII
2.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1956)
3. I.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Felix Meiner, 1974)
4.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Felix Meiner, 1974)
5.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New York: Harper & Row, 1967),
6.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0)